

2022년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1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8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7건(안건번호 제2022-37427호~3843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37427호~37467호(순번 1번~41번)은 ■■■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안건번호 제2022-37454호~37459호(순번 28번~33번), 제2022-37462호~37465호(순번 36번~3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37468호~37470호(순번 42번~44번)은 최신 방송저작물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37471호(순번 45번)은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상저작물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37472호~38433호(순번 46번~1007번)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5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인 정보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89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3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9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41번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총 41건임.

순번 1번~35번은 모두 동일한 ■■■■ 블로그에 게시된 애니메이션 영화의 불법복제물임. 35개 게시물 모두 각 영상물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하고 있음. 이중 순번 28번~33번은 조사 자료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을 확인하였으나 2022. 5. 10. 기준으로 게시자에 의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순번 36번~41번은 ■■■■ 블로그에 게시된 애니메이션 방송의 불법복제물임. 이중 순번 36번~39번은 조사 자료에 의해서 불법복제물을 전송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역시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나, 순번 28번~33번, 순번 36번~39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해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부터 41번의 ■■■■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B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1번은 시정권고로 가결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순번 28번~33번과 순번 36번~3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번~4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영상저작물 방송의 불법복제물임. 각 방송물의 최신 방송분을 전체 분량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42번 내지 44번의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ㄹㄹㄹ ㄹㄹ ㄹㄹ’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제공하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라는 취지임. 저작물의 조회수가 올라가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무료제공의 경우 일상언어로서의 이용, 즉 감상을 무료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상의 이용인 복제·전송을 자유롭게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고 있음.

- C 위원: 무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클라이언트 자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번호 등록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를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고 있음.
- A 위원, B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2번~44번은 원안대로 시정권고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 중인 영화 불법복제물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극장 개봉하여 현재 극장에서만 상영 중인 영화 '★★ ★★★★★: ★★★★★ ★★★★★'임. 게시물 제목의 '☆☆☆'이라는 기재로 미루어보아 영상저작물이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녹화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녹화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복제·전송에 이르지 않거나 미수범에 그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가 직접 녹화했거나 국내에서 녹화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불법복제물 파일 자체로 상영관에서의 녹화와 같은 범법행위를 장려하고 독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해당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는 점, 우리 저작권법의 특별 금지규정 위반을 조장하여 저작권법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45번 웹하드에서 최신 영화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판매중인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불법복제물인 동시에 우리 법의 특별규정 위반과 관련된 안전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B 위원: 시정권고 가결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5번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하도록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으로 순번 46번부터 순번 1007번까지 총 2,855건의 모니터링 안전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스펜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8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영화 '스펜서'임. 2022. 3. 16. 개봉하였으며, 합법 시장에서 7,7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영화 '배드 가이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8번은 웹하드에서 280포인트에 판매 중인 영화 '배드 가이즈'임. 2022. 5. 4. 개봉

하였으며, 2020. 5. 4. 개봉하여 상영 중인 최신 애니메이션임.

(방송 '스타트렉: 피카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75번은 웹하드에서 550포인트에 판매 중인 드라마 '스타트렉: 피카드'임. 해당 저작물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합법 시장에 제공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한 총 2,85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6번부터 순번 1007번까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37427호~37453호, 제2022-37460호~37461호, 제2022-37466호~37471호(순번 1번~27번, 34번~35번, 40번~45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 안전번호 제2022-37454호~37459호(순번 28번~33번), 제 2022-37462호~37465호(순번 36번~39번)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2-37472호~38433호(순번 46번~ 100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2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